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

1.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, 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 내용

업무 내용	전담관리기관
1.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	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2.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5호의 업무	
가. 법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수립, 조정, 추진 및 성과분석 등의 지원	
나.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운영 등의 지원	
다.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	
라. 법 제12조, 제13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취소, 육성 등의 지원	
마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	

2.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별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 내용

업무 내용	위탁기관
1.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·분석에 관한 업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
2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개선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현황 분석,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·발굴에 관한 업무	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조사·분석에 관한 업무	

3. 지정기한

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 및 업무별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다.

4. 재검토기한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